

**주식회사 케이알제9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**  
**임시주주총회의사록**

1. 일시 : 2020년 12월 24일(목) 오전 11시
2. 장소 :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, 9층  
(여의도동,SK증권빌딩) (주)케이리츠투자운용 대회의실
3. 참석자 :

주 주 총 수	:	4명
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총수	:	보통주 4,225,000주 의결권 없는 우선주 1,335,000주
출 석 주 주 수	:	3명
출석한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	:	보통주 4,175,000주 의결권 없는 우선주 1,335,000주

주식회사 케이알제9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(이하 “회사”)의 대표이사인 최동우 의장은 심의에 필요한 의결권을 가진 주주들이 소정의 소집절차에 따라 참석(서면의결권 포함)하였음을 확인한 후, 본 주주총회가 상법 및 정관 소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하였음을 알리고 개회를 선언하다.

**제1호 의안 : 회사 해산의 건**

의장은 제1호 의안을 상정하면서, 당 회사 정관 제55조에 의거 회사 해산의 건을 배부한 주주총회 자료를 통하여 설명한 후, 참석주주의 의견을 묻자, 서면의결권 포함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찬성하여 본 의안을 승인 가결하다.

**제2호 의안 : 청산인 선임의 건**

의장은 제2호 의안을 상정하면서, 청산인 선임의 건을 배부한 주주총회 자료를 통하여 설명한 후, 참석주주의 의견을 묻자, 서면의결권 포함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찬성하여 본 의안을 승인 가결하다.

**청 산 인 : 박 영 희(1975. 01. 03)**

**제3호 의안 : 청산인 보수 승인의 건**

의장은 제3호 의안을 상정하면서, 당 회사 정관 제39조 규정에 따라 청산인에게 지급할 보수에 대하여 배부한 주주총회 자료를 통하여 설명한 후, 참석주주의 의견을 묻자, 서면의결권 포함 출석한 주주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찬성하여 본 의안을 승인 가결하다.

의장은 이상으로 금일 의안 전부를 심의 종료하였음을 고하고 폐회를 선언하다.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이 기명 날인하다.

2020년 12월 24일

주식회사 케이알제9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의장 및 대표이사      최 동 우 (인)



# 임시주주총회자료



주식회사 케이알제 9 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

(주)케이알제9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 
임시주주총회 자료

◇ 일 시 : 2020년 12월 24일(목) 오전 11시

◇ 장 소 :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8길 31,9층  
(주)케이리츠투자운용 대회의실(여의도동, SK증권빌딩)

◇ 안 건

- 안 건 1. 회사 해산의 건
- 안 건 2. 청산인 선임의 건
- 안 건 3. 청산인 보수 승인의 건



## □ 배경

- 2020년 11월 5일자로 본 리츠 소유 자산(위위크타워)이 매각됨
- 자산 매각으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로 투자금의 기회비용 발생
- 부동산투자회사법 제 25조에 의거 매각일로부터 2년 이내 리츠 해산이 필요함

## □ 관련 규정

## ○ 부동산투자회사법 제 25조(자산의 구성)

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이 끝난 후에는 매 분기 말 현재 총 자산의 100분의 80 이상을 부동산, 부동산 관련 증권 및 현금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총 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은 무조건 부동산(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)이어야 한다.

② 제 1 항에 따라 자산의 구성 비율을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산은 최저자본금준비기간의 만료일, 신주발행일 또는 부동산 매각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부동산으로 본다.

3. 부동산투자회사 소유 부동산의 매각대금

## ○ 정관 제 55조(해산)

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산한다.

2. 주주총회의 결의

## □ 후속 처리 사항

- 법인등기사항 변경 : 기준일로부터 2주 이내(상법 제 183 조)
- 국토교통부 및 금융위원회 보고 :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(부동산투자회사법 제 41 조)



## □ 관련 규정

## ○ 상법 제 531 조(청산인의 결정)

① 회사가 해산한 때에는 합병, 분할, 분할합병 또는 파산의 경우 외에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. 다만,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거나 주주총회에서 타인을 선임한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.

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청산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한다.

## ○ 부동산투자회사법 제 44 조의 3(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해산의 특례)

①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를 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(제 44 조 제 3 호 또는 제 4 호에 따른 해산의 경우는 제외한다)에는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으로 구성되는 청산인회를 둔다.

② 청산인과 청산감독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하되, 정관으로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선임한다. 다만, 제 44 조 제 1 호 또는 제 2 호의 사유로 해산한 때에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법인이사 및 감독이사가 각각 청산인 및 청산감독인이 된다.

③ 청산인은 청산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고, 청산감독인은 청산인의 업무집행을 감독한다.

## □ 청산인 선임

## ○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청산인 1인을 선임한다.

- 현재 대표이사 : 최 동 우

- 청 산 인 : 박영희

- 소 속 : 법무사 정택근 사무소

## □ 후속 처리 사항



○ 법인등기사항 변경 : 기준일로부터 2주 이내(상법 제 183 조)

○ 국토교통부 및 금융위원회 보고 : 발생일로부터 10 일 이내(부동산투자회사법 제 41 조)

○ 사업자등록증 변경 : 지체없이(부가가치세법 제 8 조 6 항)

## 제 3 호 의안

## 청산인 보수 승인의 건

### 이사 및 감사의 보수관련 규정

#### 정관 제39조 (이사 및 감사의 보수)

- ① 이사 및 감사의 보수는 정기주주총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. 단, 설립 후 최초의 영업연도에 대하여는 창립발기인총회 또는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
- ② 이사 및 감사의 총 보수는 1인당 월 5,000,000원 이내에서 결정한다.
- ③ 이사와 감사의 보수결정을 위한 의안은 구분하여 의결하여야 한다.

### 청산인보수

청산인 : 없음

퇴직금은 없는 것으로 함

